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-46호

201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 공고

중소기업의 경영·생산현장에 IT를 접목하여 경영효율성 제고 및 생산성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,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지원을 위해 『2014년도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및 기술유출방지사업 시행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4. 2. 5

중소기업청장

Ⅰ.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

1. 사업 개요

○ 생산공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2. 지원 내용

○ 제조현장 디지털화를 위한 생산설비정보시스템(POP, MES, CAPP, PDM, RFID/USN) 개발·구축 지원

○ 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 등 6개 업종 제조기반 산업(뿌리산업)의 생산공정에 IT결합, 기술융합 등 新생산기법 확산 지원

* IT 기반 공정 자동화·최적화 시스템 구축 등 생산현장 및 공정의 IT화를 통해 생산 효율성 제고

3. 지원 조건 ※ 신규과제, 개선과제로 구분하여 지원

○ **(신규과제)** 동 사업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실적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

- 총 사업비의 50%(최대 6천만원) 지원

○ **(개선과제)**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보수 또는 활용도 제고를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 지원 (1회에 한함)

-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

4. 신청 자격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,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장을 등록하고 생산·제조 관련 설비를 보유한 기업

*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, 사업장 면적이 500m^2미만인 기업은 공장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

※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'뿌리산업'(주조, 금형, 열처리, 표면처리, 소성가공, 용접 산업)에 해당하는 기업 우선 지원

5. 지원 규모(예산) : 80억원

Ⅱ.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

1. 사업 개요

○ FTA 확산 등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 정보 관리 도모를 위한 시스템 구축 지원

2. 지원 내용

○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도입 및 활용교육 등 지원

< 원산지증명(확인)시스템 구축 지원유형 >

지원유형	지원내용	지원조건
서버 일체형	1인용 PC형의 다중 사용자용 서버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형 구축 지원	최대 700만원 (50% 이내)
정보시스템 연계형	ERP 등 정보시스템과 FTA-PASS, FTA-KOREA 연계모듈 구축 지원	최대 1,000만원 (50% 이내)

* 정보시스템 연계형은 ERP 등 경영정보시스템과 연계 필수

3. 신청 자격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4. 지원 규모(예산) : 10억원

◈ 2014년도 '**경영혁신플랫폼기반 정보화지원사업**'은 별도 공고 예정

Ⅲ. 기술유출방지사업

[1] 기술보호상담

1. 사업개요

○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신속한 사후대응 등을 위해 보안(기술), 법률 등 분야별 전문상담 지원

2. 지원내용

○ 분야별 전문가의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상담비 지원

- 상담분야 : ①보안진단, ②보안기술, ③법률, ④신고·수사

○ 지원조건 : 최대 11M/D까지 전문가 상담비의 전액 또는 일부 지원

* 사전진단(1M/D), 보안교육(1M/D)은 전액, 심화진단(9M/D)은 총비용의 65% 지원 (35%는 기업부담)

3. 신청자격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(예산 소진 시 까지)

5. 지원규모(예산) : 9.6억원

[2] 기술자료임치

1.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자료를 신뢰성 있는 기관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)에 등록·보관함으로써 기술보호를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고, 임치기업의 도산·폐업 시 안정적인 기술사용을 보장

* 내부 임직원 등에 의해 기술자료가 유출되더라도 개발기업은 임치물을 통해 해당 기술의 개발사실 입증 가능

2. 신청자격

○ 타 업체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

○ 내·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

○ 대기업 등 거래기업에게 핵심 기술의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

○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싶은 기업

○ 소프트웨어 등 IT기술을 정부에 납품·용역하는 기업

3. 임치대상

○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

○ 제조, 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용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(영업비밀)

* 임치기업은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부담(신규 30만원/1년, 갱신 15만원/1년)

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

5. 지원규모(예산) : 18억원

[3]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

1.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 전산망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기술 유출이나 해킹, DDoS 등 외부 공격에 대한 방지 및 대응 지원

2. 지원내용

○ 보안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보안수준 사전점검

○ 24시간×365일 실시간 네트워크 관제 및 트래픽 이벤트 등 취합·분석·평가

○ E-mail, USB 등 온라인, 이동저장매체 등을 통한 기술자료 유출 모니터링

○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, 대응 보안솔루션 제공, 현장대응 등 지원

3. 신청자격

○ 혁신형 중소기업(벤처·이노비즈·경영혁신형), 기업부설연구소(또는 전담부서) 보유 중소기업, 국가 R&D 참여 중소기업, 기타 산업기술보유 중소기업 등

4. 신청기간 : 연중 상시

5. 지원 규모(예산) : 28.3억원

[4]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

1. 사업 개요

○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

2. 지원 내용

○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 지원

3. 지원 조건

○ 총 사업비의 50%(최대 4천만원) 지원

4. 신청 자격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

※ 기술유출 피해 기업 우선 지원(기술유출 피해 여부는 중소기업기술보호 상담센터 상담 보고서, 경찰청 수사기록, 법원 판결문 등을 통해 증빙)

5. 지원 규모(예산) : 9.8억원

Ⅳ. 공통 적용사항

※ 기술유출방지사업 등 일부 사업은 제외

1. 지원절차

①신청・접수→②현장평가→③사업수행계획서 제출→④심사평가→⑤원가계산→⑥참여기업 선정→⑦협약체결 및 사업착수

* 사업성격에 따라 일부 평가과정이 달라질 수 있음

2. 신청

○ 접수기간 : 2014. 2.5(수) 09:00 ~ 3.4(화) 18:00

○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

○ 신청방법 :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 및 과제를 명시하여,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(http://it.smba.go.kr)

3.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 (최대 5점)

※ 가점은 생산현장디지털화,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,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적용

①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 (5점)

② 경영혁신형중소기업(MAIN-BIZ), 기술혁신형중소기업(INNO-BIZ), 벤처인증기업, 싱글PPM인증기업, 글로벌강소기업,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여성기업,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의한 장애인기업, 방산(물자)업체, 기술사관육성사업단 협약기업 (각 2점)

③ 뿌리산업 인증기업 (5점)

* ①과 ②의 해당항목을 포함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 가능하고, ③항목은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만 해당되며 ①과 ②의 가점과 별도로 추가 부여

4. 지원 제외대상

※ 개별 기업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○ 유흥·향락업, 숙박·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

○ 휴·폐업중인 중소기업,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

*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(전국은행연합회)에 따라 연체, 대의변제·대지급·부도 관련인, 금융질서 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

○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인 기업

Ⅴ. 지원기관(IT기업 등) 풀(POOL) 등록

※ 지원기관은 IT기업(생산현장디지털화,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) 및 보안 솔루션 구축 가능 기업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)을 의미

1. 지원기관 풀(Pool) 등록요건

○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,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인 력	○ 중급기술자 이상 전문인력 5인(고급기술자 2인 포함)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* 인력은 상시근로자 기준(고용보험 가입 기준) * 사업참여인력은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(career.sw.or.kr 참조), 단, 기존참여인력 중 등급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* SW기술자 전문인력 확인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'2013년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'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
인프라	○ (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) 생산설비정보화 솔루션(POP, MES 등)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H/W, N/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○ (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사업) 원산지증명 솔루션(전자무역솔루션, 원산지증명시스템, CRM, ERP 등)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H/W 등의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○ (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) 보안솔루션(네트워크, 서버,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)을 보유하고,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·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* 보안적합성 검증(CC인증)을 받은 보안솔루션 보유기업 우대
사 업 실 적	○ (공통) 최근 3년 이내에 5천만원 이상(단일사업)의 관련분야 정보시스템 개발실적 각 2건과 500만원 이상 유지보수 실적(1년 이상 기간) 각 1건 이상 보유 기업 * 중소기업(수요기업) 확인 실적증명서 제출 * 사업 실적은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, 솔루션 실적은 불인정 (단,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은 예외적으로 솔루션 실적 인정)
기 타	○ 「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」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기관 *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(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) 제출 ○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-등급 이상(유효기간은 사업공고일 기준) * 신용평가기관 : 나이스디앤비, 나이스신용평가정보, 서울신용평가정보, 한국기업데이터, 한국기업평가 ○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규제받고 있지 아니하는 기업 ○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* 지원기관(IT기업) 간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

2. 지원기관 풀(Pool) 신청

○ 해당사업 :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,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지원사업,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사업

○ 접수기간 : 2014. 2. 5(수) 09:00 ~ 3. 4(화) 18:00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 및 구비서류

* 관련양식은 http://it.smba.go.kr에서 다운로드 가능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(http://it.smba.go.kr)

○ 접수처 :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정보화부(042-388-0314~5)

3. 지원기관 관리

○ 지원기관 풀 등록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하여 2014년 정보화사업 지원기관 풀에 등록

- 등록된 지원기관은 지원사업 신청기업과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심사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만 정보화지원사업 수행

○ 정보화지원사업 수행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도, 사업 수혜실적, 참여기업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일정 점수 미만의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차년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 예정

Ⅵ. 지역별 순회설명회 일정

일 시		장 소
2014. 2.7(금)	14:00	SETEC(서울)
2014. 2.10(월)	14:00	전자부품연구원(광주)
2014. 2.12(수)	14:00	부산·울산지방중소기업청(부산)
	14:00	대구·경북지방중소기업청(대구)
2014. 2.14(금)	14:00	경기지방중소기업청(수원)

* 정보화지원사업 설명 후 '기술보호 설명회' 실시 예정

Ⅶ. 문의 및 연락처

기관명	연락처 (홈페이지)
중소기업청	기술협력보호과, 042-481-4400, 4405 (www.smba.go.kr)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	경영정보화부, 042-388-0314~5 (www.tipa.or.kr)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	기술자료임치센터, 02-368-8762~5 (www.kescrow.or.kr)
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	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, 02-3489-7051~3 (www.kaits.or.kr)

* 기술유출방지사업과 관련하여서는 '중소기업 기술보호 포털'(www.ultari.go.kr) 참조

중 소 기 업 청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
대 · 중소기업협력재단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